

- 2021.3.1.부터 외국인 유학생도 국민건강보험에 가입됩니다 -

가입대상

- 유학생, 외국인 및 재외국민

가입시기

※ 국내 체류 유학생 중 건강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유학생은 2021.3.1.로 당연가입됩니다

| 체류자격 구분 | 적용시기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유학(D-2), 초중고생(D-4-3) | 최초입국 시 → 외국인등록일 |
| | 외국인등록 후 재입국 시 → 재입국일 |
| 초중고생(D-4-3) 외의 일반연수(D-4) | 입국일로부터 6개월 후 가입 |
| 재외국민·재외동포 유학생 | 입국 후 학교 입학일로 가입 (재학증명서 제출하는 경우) |

보험료 부과

- 2021년도 유학생 보험료: 43,490원 (3.1.취득자)
- 4월 보험료 39,540원 + 3월 보험료의 10회 분할 중 1회분 3,950원
 - ☞ 지체가입자 평균보험료 이상 납부자의 경우 제외
 - ☞ 소득금액 360만원, 재산과표 13,500만원 초과인 경우 경감 대상 제외
- (보험료 경감)
 - 유학생 보험료 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1년간 50% → 70%로 할인(경감) 확대

| 현 행 | → | 2021.3. ~ 2022.2. |
|--------|---|-------------------|
| 50% 경감 | | 70% 경감 |

※ 보험료 부담을 줄이기 위해 2021.3월분 보험료는 10회로 분할하여 납부됩니다

실제 보험료 : 43,490원 = 월 보험료(39,540원) + 3,950원(1회차 정산분)

- (보험료 납부)
 - (납부기한) 다음달 보험료를 매월 25일까지 미리 납부
 - (예시) '21.4월 보험료 → '21.3.25. 까지 납부 (매월 10일경 고지서 발송)
 - (납부방법) 자동이체(계좌·카드), 홈페이지, 공단지사, 은행

보험료 부과

- (전자고지·자동이체 및 환급사전계좌 신청) : 전화, 홈페이지, 외국인민원센터, 공단지사에서 신청
 - 우편 대신 이메일 고지서 또는 모바일 고지서 신청 가능
 - 자동이체 신청으로 편리한 납부 · 환급사전계좌 등록으로 빠른 지급

안드로이드 아이폰(iOS)

전자고지 신청 가능
"The 건강보험 APP"

건강보험 혜택 가입일부터 이용 가능

- (내국인과 동일한 혜택) 치과 · 한의원 진료, 건강검진, 임신 · 출산관련 진료비(국민행복카드), 다양한 혜택을 누릴 수 있음
- ※ 업무나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질환에 대한 치료 등 건강보험 미적용 사항은 제외 (예)미용목적의 수술 등

※ (본인부담금) 의료기관 이용 시 비용의 일부만 부담

- 외래진료 : 건강보험 적용 총비용의 30~60% (요양기관 종류 및 소재지에 따라 차이, 입원진료는 20%)

※ 일반건강검진은 출생연도를 기준으로 2년(비사무직 1년)마다 1회이상 실시
... 2021년도는 홀수연도 출생자

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불이익

- (보험급여제한) 납부기한 다음달 1일부터 보험료를 안납할 때까지 병·의원 등에서 보험혜택을 받지 못함
- (비자연장 등 제한) 법무부에 비자연장 등 체류허가 신청 시 불이익 발생
 - (예외) 건강보험료 50만원미만, 기타징수금 10만원미만 체납자의 경우는 비자연장 제한 없음
- (체납처분) 기한을 정하여 독촉을 하고, 그 기한까지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, 부동산 · 자동차 · 예금 등을 압류하는 강제징수 절차가 진행될 수 있음
 - 체납금은 분할납부 가능하며, 체납보험료 완납 시 보험급여 제한 해제 되어 보험급여 이용 가능

민간보험과의 차이점

- (즉시 혜택) 진료 후 사후 보험금 청구절차 없음
- (보장 횟수 · 금액) 횟수·금액 제한 없음 *비용의 일부는 본인이 부담함
- (본인부담금 상한제) 가입자의 소득수준 등에 따라 7단계로 구분하여 연간 본인부담금의 초과금액을 환급
- (임신 · 출산 진료비 지원) 임신 · 출산 관련 진료 및 처방된 약제·치료재료 구입에 사용할 수 있는 이용권(국민행복카드) 제공, 전국 각지사 및 금융기관에서 카드 신청 접수 가능

가입절차

- 유학생이 공단에 별도로 신고하지 않아도 자동 가입처리
- 국내 체류지(거소지)로 건강보험증과 가입안내문 발송

※ 다만, 아래의 경우 반드시 가까운 지사에 방문하여 신고
(서울 · 경기 · 인천 지역에 거주하는 경우 관할 외국인민원센터에 신고)

- 가족(배우자 및 미성년 자녀)과 함께 보험료를 납부하고자 하는 경우
- 국내에서 유학 중인 재외국민 또는 재외동포(F-4)가 가입하는 경우
- 체류지(거소지), 여권번호, 체류자격 등에 변경사항이 있는 경우

※ 외국의 법령, 외국의 보험, 사용자와의 계약으로 건강보험 급여(법 제41조에 따른 요양급여)에 상당하는 의료보장을 받아 건강보험이 필요하지 않는 경우 건강보험 가입 제외 신청 가능


가족인정기준 및 서류제출기준

- 가족과 함께 보험료를 납부하고자 하는 경우 신청절차
 - 대상 : 배우자 및 19세 미만 미성년 자녀(국내 체류지가 동일하여야 함)
 - 가족관계 증빙서류 제출기준
- ① 가족 · 혼인관계서류 발급 ② 국적국외교부 또는 아포스티유 확인
③ 한글 번역공증

※ (서류 유효기간)
- 국내 발급서류 : 발급일로부터 3개월
- 외국 발급서류 : 서류발급일 또는 외교부(아포스티유) 확인일로부터 9개월

외국인민원센터 운영안내 서울 및 수도권

- (처리업무)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및 피부양자의 자격취득, 자격관리, 보험료 수납 등
- (이용대상) 아래 지역에 거주하는 외국인 및 재외국민은 해당 센터 이용

| 센터명 | 관할지역 | 센터 안내 |
|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서울센터 | 서울 전역 |  |
| 안산센터 | 안산, 시흥, 군포 | |
| 수원센터 | 수원, 용인, 화성, 오산, 성남 | |
| 인천센터 | 인천, 부천, 김포, 광명 | |
| 의정부센터 | 의정부, 남양주, 가평, 포천, 동두천, 연천, 양주, 구리, 고양, 파주 | |

※ 그 외 지역에 거주하는 경우 가까운 지사로 방문



문의 Inquiry / 상담 Consultation

☎ 1577-1000

외국어 서비스 단축번호 7번
- Dial 7 for information on foreign languages.

☎ 033-811-2000

외국어(영어, 중국어, 베트남어, 우즈베크어) 상담 가능
- Service in foreign languages (English, Chinese, Vietnamese and Uzbek) available

※ 상담시간 : 평일 오전 9시 ~ 오후 6시 / ※ Service Hours : 9:00 am - 6:00 pm on weekdays